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30권 제3호(통권 제119호, 2019・가을)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모순, 그리고 '탈구금'의 전망 : 핀란드 교도소의 구금 방식과 한계를 중심으로*

1)

김형주**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핀란드의 구금 방식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구금의 문제를 재성찰하는데 있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수용환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핀란드는 교도소 수용자 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핀란드는 보다 포용적인 구금 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2017년 현재 전체 수용자의 34%가 개방형 교도소에서 일반 주택과 비슷한 외관의 숙소에서, 사복을 입고 (필요할 경우) 외부에서 노동하고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인도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때로는 교도소를 탈옥하기도 한다. 또한 젊은 수용자는 교도소 내에서 동성 간의 강압적인 성폭력, 혹은 합의된 성 거래를 하고 있으며,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에 비해 좋지 못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민자 수용자 역시 직원들과 다른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교정공무원의 재량도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수용자를 배제하기보다 포용하려는 구금 방식을 추구하는 핀란드 교도소 역시 불완전하다면 구금은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실험교도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실험 교도소'는 분명한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범죄자와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여러 정책들을 실험하는 것이다. 그것의 최종목표는 폐쇄형 교도소의 축소와 개방교도소의 확대에 있다. '실험교도소'는 소규모여야 하고, 치료와 재활, 노동과 교육 기능은 분리한다. '실험교도소'의 공간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와 연결되어야 하며, 수용자는 사복을 착용하고 폭넓은 권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주제어 : 핀란드, 교정정책, 교도소, 구금 대안, 실험교도소

---

* 이 글은 박사논문의 일부와, 2019년 5월 3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Ⅰ. 문제제기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시설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구금은 주로 교도소라는 시설을 통해 작동하는데, 특히 19세기 말 교도소의 구금 기술이 정교화되면서, 대중들은 교도소가 효과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구금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그저 상상으로 구성되었다는데 있다. 우리는 범죄자를 구금함으로써 그를 처벌하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정말로 구금이 그러한 효과를 생산하는지 알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구금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이론적 논의를 가로막는데 있다. 잔혹한 범죄 뒤에 뒤따르는 논쟁은 형의 기간이 적절한가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무기징역과 같은 장기형 혹은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이 선고될수록 대중들은 안도한다. 범죄자의 폭력은 용인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혹은 대중적으로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형벌에 대한 정당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교도소에 오랫동안 구금하면 범죄자는 처벌되고 범죄는 예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금기시될 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금의 문제를 교도소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금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한걸음 물러나, 구금의 작동방식과 수용자들의 삶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구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사회에서 범죄와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경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각국의 형사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화권별로, 사회체제별로, 혹은 지역별로 공통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법학자들은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법질서를 법체계(legal system, Rechtssystem), 법가족(family of law, Rechtsfamilie), 법권(Rechtskreis) 혹은 법문화(Rechtskultur)라고 부르며 구분하고 있다.”[1)]

구체적으로 법계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쯔바이케르트-쾨츠(Zweigert-Kötz)는 ①법질서의 역사적인 유래와 발전, ②그 법질서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특수한 법학적 사고방식, ③특히 특징적인 법적 제도들, ④법원(法

1) 최종고, 아시아법의 법계와 체계, 아시아법제연구, 법제연구원, 2004, 2면.

源)의 성질과 그 해석, ⑤이데올로기적 요인들의 다섯 가지로 법계를 구분한다. 그들에 따르면 세계의 법권은 라틴법권(romanischer Rechtskreis), 독일법권(deutscher Rechtskreis), 북구법권(nordischer Rechtskreis), 영미법권(Rechtskreis des Common Law od. anglo-anerikanischer Rechtskreis), 극동법권(femöstlicher Rechtskreis), 이슬람법권(islamischer Rechtskreis) 및 힌두법권(Rechtskreis der Hindu-Rechts)의 8개의 법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현대 비교법학에서 가장 세련된 법계론으로 인정받고 있다."[2)]

여기서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북구법권이다. 북유럽은 형벌에 관한 태도에서 다른 법권과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극동법권과 이슬람법권을 포괄하는 아시아, 구체적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이슬람 문화권 일부에서는 신체형을 통한 형벌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서구 국가들은 신체형보다 구금형을 선호한다. 특히 영미법권의 국가들은 대규모 구금을 선호한다. 영어권 국가들의 인구 10만 명 당 수용자의 비율은 뉴질랜드가 214,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146.4, 스코틀랜드 142.4, 미국 666, 캐나다 114, 호주가 172에 달한다.[3)]

하지만 북유럽은 신체형을 추구하지 않으며 구금을 통한 형벌 역시 지양한다. 북유럽 여러 국가 중에서 핀란드는 수용자의 비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매우 혹독했던 구금 방식을 단기간에 북유럽식 제도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핀란드는 처음부터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교도소와 비슷한 제도를 표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수용자 비율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았고, 1990년에 비로소 이웃국가들과 비슷해졌다.[4)]" 1960년대까지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5)]

그러나 핀란드는 1960년대에 북유럽식 형사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구금을 지양하면서 교도소 조건을 개선했다. 핀란드는 1960년대 후반의 교도소개혁 운동과 북유

2) 최종고, 주 2)의 논문, 8-9면.

3) www.prisonstudies.org

4) Von Hofer, H. & Lappi-Seppälä, T. & Westfelt, L, Nordic Criminal Statistics 1950-2010, Summary of a report. 8th revised edition. Stockholms universitet. Kriminologiska institutionen, Rapport 2012:2, 2012, 16면.

5) Honkala, K, "YK:n ihmisoikeudet vankiloihin!. Marraskuun liikkeen suomalaisen kontrollipolitiikan kritiikki, 1967-1972", 2011 참조.

럽 형사정책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수용자의 수를 대폭 줄이고, 수용자의 인권을 개선시켜나갔다. 여러 차례의 교도소법 개정을 통해 1970년대에는 수용조건의 개선되었고, 80년대에는 복지정책이 교정정책과 결합되었으며, 90년대에는 수용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기본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까지 보장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수용자의 약물문제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인도적' 교정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6)]

이처럼 핀란드의 교도소는 북유럽 문화권 안에서도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핀란드의 구금 방식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구금의 문제를 재성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교도소에서 구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둘째 핀란드 구금 방식의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구금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Ⅱ. 이론적 논의: 구금의 한계와 대안

1. 범죄와 형벌 부정

형벌의 정당화에 대한 의문과 구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감옥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논의는 형벌과 범죄 자체에 대한 부정에서 감옥에 대한 부정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훌스만(Hulsman, L. H)과 크리스티(Christie, N)는 형벌과 범죄를, 마티센(Mathiesen, T)은 감옥 폐지를 주장했다. "범죄란 형사정책과 범죄정책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형사정책과 범죄정책이야말로 범죄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형법 즉 범죄로 규정하는 범죄화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방식 중 한 가지일 따름이다."[7)] 그들은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는 가정을 부정하면서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유할 것

6) 김형주, 핀란드에서 구금 방식의 전환과 함의: 1975년-2015년, 교도소법 개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 2019, 249-283면 참조.

7) Hulsman, L. H,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 문성호·이승권 옮김, 사람소리, 2009, 15면.

을 제안한다.

크리스티에 따르면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라고 불리는 용어가 존재할 뿐이다. ‘범죄’라는 용어는 흔히 ‘미친’, ‘나쁜’, ‘악한’ 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행위들을 포획하여 ‘범죄화’한다.[8] 즉 인간 행위는 매우 복잡한 도덕 범주 안에 놓여 있고, 하나로 단순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데, 사회통제체계는 인간 행위를 범죄라는 용어로 과잉 단순화한다. 또한 인간 행위를 범죄라는 이름으로 단순화했어도 이를 측정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사회는 과거에 범죄가 되지 않았던 가정 내 체벌이나 학교에서 체벌까지 범죄화하고 범죄라고 불리는 상황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9] 나아가 그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다.

> “여기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여기서 묘사될 무대는 아파트 건물들로 둘러싸인 작은 공원이다. 북유럽에서 여름이 고조되는 6월에, 해와 빛을 축하하는 달에,[10] 어느 일요일 정오 전에, 일주일의 이러한 가장 조용한 시간을 말하기에 '교회 시간'이라는 말은 매우 구식이다. 공원을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사람들은 늦은 아침을 먹거나 혹은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가방을 맨 한 남성이 공원에 도착했고, 벤치에 앉았다. 그는 맥주를 가지고 있었고, 혼잣말을 하며 한 병 한 병 따서 먹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 한두 명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는 청중들의 즐거움을 위해, 말하고 노래했다. 한참 후에, 그는 일어나 공원의 수풀 사이로 걸어 들어갔고, 바지 앞섶 단추를 풀었다. 몇몇 아이가 그를 따라 움직였다.
>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교차시키기 위해, (공원과 밀접한) 하나가 아닌, 두개의 아파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원을 마주하고 있는 두 아파트는 정확하게 비슷한 외양을 하고 있고, 같은 계획에 따라 지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다르다. 한 아파트는 근대적인 방식으로, 전문적인 건축 회사에 의해 지어졌다. 입주자들이 들어오기 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잠금장치를 비롯하여 주차장에서 각 층으로 연결된 승강기까지 전부 완료되었다. 그것을 '완벽한 아파트'라고 부르자. 다른 아파트는 더

8) Christie, N, Victim movements at a crossroad, Punishment & Society, 12(2), 2010, 118면.
9) Christie, N, A suitable amount of crime. Routledge, 2004 참조.
10) 겨울이 매우 길고 어두운 북유럽에서 하지축제는 매우 특별한 날이다. 사람들은 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짓날 낮부터 다음날까지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축제를 즐긴다.

격동적인 역사를 보냈다. 건축주는 파산했고, 더 이상의 자금이 없었다. 승강기도 없었고, 건물 현관도 없었으며, 부엌도 준비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될 대로 되란 식의 상황이었다. 건축주의 파산 전에 이미 자금을 지불했던 입주자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서로 힘을 합쳐 문을 고치고 하자가 있는 천장과 복도, 진창길을 보수했다. 그리고 건축주를 고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서로 연대하게 만들었다. 그 아파트를 '혼돈의 아파트'라고 부르자.

그리고 다시 공원의 그 남자로 돌아와서. 수풀들에 절반쯤 가려진,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그 남자, 앞섶 단추를 푼 상황은 매우 다른 해석을 열어 주었다. '혼돈의 아파트'의 경우 그 상황은 매우 명백했다. 수풀 속에 있는 그 남자는 안나의 아들인 피터이다. 그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고, 행동이 점차 이상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혼돈의 아파트' 주민에게 하지축제의 밤이 긴 것만큼이나 익숙한 것이었다. 그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의 가족에게 전화가 왔거나 다른 사람이 그를 집으로 집에 데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완벽한 아파트'의 경우, 이 상황은 달랐다. 입주민은 누구도 그를 몰랐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상한 남자가 그의 성기를 노출한 것이었다. 품위 있는 목격자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전화기로 달려갔고 경찰에게 전화했다. 외설적인 노출 사건은 신고되었고, 심각한 성 사건은 아마도 억제될 것이다."[11)]

이 이야기는 크리스티가 '범죄의 적정량 『A Suitable Amount of Crime』 (2004)이라는 책에서 하지축제 기념일에 노르웨이의 북부 마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크리스티는 이 이야기를 이웃과의 단절이라는 현대성의 이면이 불러온 폐해를 지적하고,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 혹은 '어떻게 범죄가 만들어 지는가'라는,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사용했다. 크리스티는 범죄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경찰과 같은 공식적 기능이 발달한 사회에서 더 많이 생산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범죄 행위와 범죄자에 대한 다른 대안적인 해석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가? 어떤 조건이 범죄를 만드는가?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형벌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크리스티가 보기에 "형사체계는 사회 통제에 대한 정식화(범죄에 대한 법적 규

11) Christie, N, 주 11)의 논문, 4-6면.

정)를 통해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한다. 범죄와 형벌에 의문을 제기할 때, 국가체계는 종종 저항할 것이고, 통제와 상징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계속해서 크리스티는 형벌에 대해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기 전에 당사자들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당사자들 간에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임은 법정선고 이후에 감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12] 그에게 형벌의 부과와 부과되는 형벌의 양은 희생자가 가해자와 얼마나 가까운가에 달려 있다. 크리스티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덴마크에서 진행된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희생자뿐만 아니라 감옥의 경비대 혹은 일반인들조차 범죄와 가해자에게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들에게 고통(형벌)을 부과하려는 열망은 점점 줄어든다고 주장했다.[13]

구체적으로 그는 수용소 경비대에 대한 연구에서, 경비대와 수용자 사이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들은 결코 죄수들을 심각하게 고통받는 일상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그들은 그렇게 가까이 가서 죄수들이 일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경비대원들이 죄수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죄수들을 일상적인 고통을 받은 인간들로 보았다." 크리스티에 따르면 프래민 발비그(Flemming Balvig, 2006)가 덴마크에서 한 연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준다. 발비그와 그의 동료들은 몇몇 단계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다. 먼저, 그들은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형벌은 적당한 수준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아니다', 혹은 '형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경험 있는 판사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형벌에 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다시 그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결과는 매우 달랐다. '추상적인 용어들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에 마주하고 나서 덴마크인들은 직업적인 판사들보다 상당히 덜 가혹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팀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동일한 네 가지 사건을 묘사하는 비디오를 만든 다음, 다시 무엇이 옳은 형벌인가'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응답자들은 훨씬 더 관대해졌다. 그들이 범죄와 가해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그들이 고통(형벌)을 부과하려는 열망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14]

12) Christie, N, 주 10)의 논문, 119면.
13) Christie, N, 주 10)의 논문, 120면.
14) Christie, N, 주 10)의 논문, 120면.

이러한 주장은 이미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형사제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들린다.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형벌에 대한 지난한 토론과 소통, 공동체의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크리스티가 상정하고 있는 공동체나 그가 직접 실험했던 공동체는 합리적 이성과 끈끈한 연대를 전제로 하거나, 대단히 소규모여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형사제도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는 것은 분명하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범죄 혹은 범죄자에 대한 정보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교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크리스티가 제시한 공원의 남자에 관한 이야기는 똑같은 행위가 어떤 사회에서는 형벌로 이어지고 어떤 사회에서는 형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사회에 따라 다르다면 구금형의 강도와 양은 물론 감옥의 구조와 운영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수십 년 형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12년형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감옥 폐지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한다는 주장은 감옥 폐지로 구체화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폐지주의란 무엇을 폐지하자는 것인가? 통상 “범죄(개념)의 폐지, 피해자의 폐지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예컨대 ‘좋은 감옥’ 혹은 ‘감옥의 모델’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온갖 사실관계와 증거를 무시한 채 거꾸로 마치 그런 게 있다고 보는 환상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감옥이란 본질적으로 억압제도이자 부패제도인 까닭에 법을 통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다룬다거나 제대로 치유하는 사회적 모델로 개선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두는 제도를 없애고 대신 ‘재활제도’로 복귀하도록 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15] 감옥 폐지주의에 따르면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론적 근거가 없는 허구이며, 형벌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형벌의 한 형태로 유

15) Hulsman, L. H, 주 9)의 논문 15면.

지되는 감옥도 같은 맥락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감옥 폐지에 초점을 맞추는 논자들은 특히 감옥제도의 역사적 한시성을 지적한다. 감옥의 탄생 자체는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각종 신체형(corporal punishment)에 대한 성공적인 '폐지'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자유형은 거의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렀지만,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다른 모든 형벌을 물리치고 지배적인 형벌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감옥제도는 거대한 실패로 간주되고, 일종의 총체적 시설(total institution)[16]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든 치유될 수 없는 결함을 본질적으로 안고 있다면, 그것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17] 이 같은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는 그렇다면 감옥의 대안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폐지론자들은 노예제의 폐지가 대안을 만들어낸 후에 폐지되는 과정을 밟지 않았던 것처럼, 감옥 폐지도 대안이 먼저 강구되고 난 뒤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감옥에 초점을 맞추어 폐지론을 주장한 마티센은 매우 급진적으로 폐지론을 주장했다. 마티센은 1960년대 노르웨이 감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옥이 일탈 행위자를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재진입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과, 대다수 감옥에서 수용자에게 지나치게 혹독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폐지론을 주창한다.[18] 그에 따르면 “현재의 체제에서 제시되는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 질서 자체의 폐지를 시도하여야 한다. 현존 질서를 다른 어떤 완성된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는 모두 좌절될 수밖에 없고 체제를 완성하는 과

16) 총체적 기관은 상당한 수의 개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차단되어, 공식적으로 통제된 생활 속에서 거주하거나 노동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감옥은 그것의 분명한 예이다(Goffman, 1961: 11). 총체적 기관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첫째, 모든 일상생활이 동일한 장소에서 단일한 당국 아래서 수행된다. 둘째, 개별 구성원들의 일상 활동의 각 단계는 전체 구성원을 통제하는 큰 배치 속에서 수행되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동일한 일을 함께 수행한다. 셋째, 일상 활동의 각 단계는 사전에 정해진 활동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활동들로 빽빽이 짜여 있고, 전체 활동은 명백하고 공식적인 규칙에 따라 공무원들에 의해 강제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게 부과된 활동들은 모두 그 기관의 공식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단일한 계획아래서 수행된다(Goffman, E, Asylums: essays on the soocial situatio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1961, 17면).

17) 한인섭, 주 5)의 논문, 224-225면.

18) Mathiesen, T, The defences of the weak: A sociological study of a Norwegian correctional institution, Routledge, 2012, 7면.

정에 이미 과거로의 회귀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19] 하지만 나중에 마티센은 초창기 급진적인 주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었다. 그는 감옥의 팽창을 저지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완전히 중단시키고자 했다. 그는 더 이상의 감옥 신축에 반대하면서 8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감옥은 더 이상 특별예방(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감옥의 일반예방 내지 범죄억제효과도 미비하다. 셋째, 감옥의 과밀화 문제는 감옥 신축이 아니라 양형규정을 개정하고, 가석방요건을 완화하고, 미결구금자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넷째, 감옥 건물은 한번 건축되면 쉽게 용도 폐기되지 않으며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감옥제도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감옥도 대체물이 아니라 보완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감옥을 옹호할 수 없다. 감옥은 인간을 굴욕적인 상황에 몰아넣고, 고립화시키며 주체성을 파괴한다. 일곱째, 문화수준과 가치관에 부정적 효과를 끼친다. 감옥은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폭력과 굴욕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감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20]

마티센은 폐지주의를 주창함과 동시에, 1960년대 후반 북유럽에 불어 닥친 감옥 폐지 운동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감옥 폐지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주도했다.[21] 실제로 마티센의 주장은 너무 낭만적이라 비판받는 폐지주의 이론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의 실천 활동이 북유럽의 독특한 형벌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비록 감옥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했지만, 북유럽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22] 따라서 이 연구는 폐지주의 이론이 북유럽에서 감옥제도를 변형시키는데 많

19) 정승환, 폐지주의의 형사정책적 의미, 고려법학, 55, 162면 재인용.

20) 한인섭, 주 5)의 논문, 228-229면.

21) (문성호 2010: 88; Mathiesen, 1986: 9-11)문성호, 감옥폐지주의, 인권복지연구, 2010, pp.87-108; Mathiesen, T, The politics of abolition. Contemporary Crises, 10(1), 1986, pp.81-94.

22) 범죄와 형벌, 그리고 감옥을 포괄하는 폐지론적 논의는 한국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관련된 연구도 폐지주의를 북유럽 형사정책의 하나의 배경으로 설명할 뿐, 폐지주의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한인섭, 주 5)의 논문) 폐지주의 이론과 운동에 집중하더라도 이를 소개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문성호, 스트레인지웨이스 감옥봉기: 감옥운동의 지평, 사람소리, 2009: 문성호, 주 23)의 논문). 반면 정승환은 폐지주의를 검토하고 자유형의 축소, 사회 내 제재의 발전, 우회처분, 원상회복과 범죄자-피해자-화해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제 폐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북유럽의 사례

은 영감을 주었음을 인정하면서, 핀란드의 감옥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과 자료

핀란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인도주의적인 감옥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에서 핀란드의 감옥제도가 연구대상이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것이 정말로 인도주의적인지, 감옥의 외양과 내용만 바뀌었을 뿐 결국 기존과 다를 바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핀란드에 거주하면서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 핀란드 투르쿠 대학(Turun Yliopistio)과 오보 대학(Åbo Akademi), 헬싱키 대학(Helsingin Yliopisto)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집했다.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주로 감옥법[23]과 감옥규칙, 정부와 의회의 제안서, 옴부즈맨의 조사 보고서 등 공식적인 기록물과 감옥제도와 수용자들의 경험에 관한 논문과 브로셔, 신문과 잡지, 그리고 영상과 사진 자료 등이다. 따라서 연구는 수집 문헌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핀란드의 구금에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핀란드 감옥의 구금 방식을 분석하는데 감옥법과 감옥규칙이 주되게 활용되었다. 핀란드에는 총 26개의 감옥이 있는데 각 감옥은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감옥이 최근의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해 놓았다. 이외에 감옥제도 전반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형사제재본부 사이트(www.rikosseuraamus.fi)를 통해 수집하였다. 형사제재본부는 감옥규칙을 비롯한 교정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 매년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자료실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은 핀란드의 근대적 교정제도가 확립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본부는 교정제도의 역사에 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정승환, 주 21)의 논문).

23) 감옥법은 1974년 1995년, 2005년, 2015년 안이 수집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법을 주로 참조한다.

다음으로 구금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수용자들을 인터뷰한 논문과 보고서, 신문과 잡지, 영상 자료와 옴부즈맨 보고서 등을 활용했다. 특히, 핀란드 감옥과 관련된 영상자료와 옴부즈맨 자료는 감옥 내부와 수용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영상들은 핀란드 감옥 연구자들과 KRIS(Criminals' Return Into Society) 각 지부 관계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이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핀란드에서 구금의 작동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핀란드 감옥의 규율과 그것이 행사되는 방식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Ⅳ. 핀란드 교도소와 구금 방식

1. 교도소 현황

핀란드에는 총 26개의 교도소가 있다. 2017년, 수용자의 66%가 폐쇄형 교도소에, 34%가 개방형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RISE, 2017: 11), 폐쇄형 교도소보다 더 자유로운 조건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간주되는 수용자(경범죄자, 청소년수용자, 모범수, 가석방 대기자 중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규정을 잘 지킬 것으로 판단되는 수용자)가 개방형 교도소로 이송된다. 남성과 여성은 교도소 내 별도의 시설에 분리 수용되며, 함멘린나(Hämeenlinna) 부근에 위치한 바나야(Vanaja) 개방형 교도소는 수용자가 아동과 머무를 수 있는 가족사동이 있다. 수용자는 교도소에서 매일 음식과 의복을 지급받고, 교도소 규정과 보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복을 입을 수 있다.[24)]

24) Rikosseuraamuslaitos, Rikollisuuden ja rikosten uusimisen vaheneminen laskivat rikosseuraamus asiakkaiden maaraa. 2015. 3. 26. http://www.rikosseuraamus.fi/fi/index/ajankohtaista/tiedotteetjautiset/2015/03/rikollisuudenjarikostenuusimisenvaheneminenlaskivatrikosseuraamusasiakkaidenmaaraa.html, 2018. 8.18 검색. 참조.

〈표 3-1〉 핀란드 26개 교도소와 규모

교도소 유형	지역	교도소명	수용거실 수	평균수용자 수 (2017년)
폐쇄형	남부	헬싱키(Helsinki)	232	250
		반따(Vantaa)	183(구치 및 이송)	201
		리히마끼(Riihimäki)	223	214
	서부	함멘린나(Hämeenlinna)	112(여성)	91
		뀔마꼬스끼(Kylmäkoski)	113	123
		뚜루꾸(Turku)	255	276
	동북부	꾸오피오(Kuopio)	93/20(석방대기실)	94/24(석방대기자)
		미껠리(Mikkeli)	110	117
		오울루(Oulu)	80	82
		뻴소(Pelso)	58	57
		뿌하셀까(Pyhäselkä)	87(남녀)	83
		쑤께바(Sukeva)	181	175
폐쇄형과 개방형 병존	남부	요껠라(Jokela)	84(폐쇄)/40(개방)	96(폐쇄) /48(개방)
	서부	싸따꾼따(Satakunta) : 꼬위리오 지역(Köyliö, 폐쇄형) 후이띠넨 지역(Huittinen, 개방형)	73(폐쇄)/107(개방)	총 157
		바싸(Vaasa)	58(폐쇄, 남녀) /12(개방, 남성)	총 75
개방형	남부	수오멘린나(Suomenlinna)	100	137
		께라바(Kerava)	94	101
	서부	바나야(Vanaja)	60(여성)/10(가족)/40(남성)	총 126
		까위라(Käyrä)	73	67
		비뿔라(Vilppula)	73	84
	동북부	유카(Juuka)	40	42
		께스틸라(Kestilä)	46	51
		라우까(Laukaa)	59	61
		나라야르비(Naarajärvi)	101	97
		쑬까바(Sulkava)	48	53
		윌리또르미오(Ylitormio)	40	40
총계			1,962(폐쇄) 943(개방)	2,040(폐쇄) 922(개방)

※ 출처: Rikosseuraamuslaitos, 2018.11.24 자료를 재구성

<표 3-1>에서 보듯이 핀란드에는 총 26개의 교도소가 있고 이 중 12개의 폐쇄형 교도소와 3개의 폐쇄형과 개방형이 병존하는 교도소, 11개의 개방형 교도소가 있다. 폐쇄형과 개방형을 포함한 모든 교도소는 주로 남성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수도에 있는 헬싱키 교도소로 총 232개의 수용거실(전체 교도소 평균 수용거실 수 111개)이 있다. 여성 수용자는 폐쇄형 교도소의 경우 함멘린나, 뻬하셀까, 그리고 바싸 교도소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함멘린나 교도소는 여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으로, 전체 여성 수용자의 상당수(약 60%)를 수용하고 있다. 개방형 교도소의 경우 바나야 교도소가 여성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여성 수용자는 2017년 현재 총 수용자의 8%, 년 평균 230명이 있다.[25)]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도소에서 수용거실의 수와 평균 수용자의 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 평균 수용자의 수가 수용거실의 수를 초과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것은 수용자들이 대부분 독거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리히마끼, 함멘린나, 싸따꾼따, 바나야 까위라 교도소는 수용거실의 수보다 년 평균 수용자의 수가 더 적다. 이는 핀란드가 구금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넘쳐나는 수용자들로 교도소의 조건이 열악해 지고 있는 미국이나 교도소를 신축하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2. 구금 방식

가.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구금 방식의 혼용[26)]

핀란드는 교도소에서 배제하는 구금 방식(폐쇄형 교도소)와 포용하는 구금 방식(폐쇄형 교도소 일부 사동, 개방형 교도소)를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포용하는 구금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배제하는 방식은 수용자를 훈육이 필요한 위반자로

25) RISE, Criminal Sanctions Agency Statistical Yearbook 2017, 2017, 17면.

26) 이 절은 핀란드 교도소법과 교도소규칙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이다. 폐쇄형 교도소의 사동 공간 구획은 Arkkitehdit MV oy, Oulun Vankila Rakennushistorian Selvitys, 2011, 6/20면을 참조하고, 사동 내 수용자의 분리 수용은 Helsingin 교도소 규칙 12장을 참조. 핀란드의 포용적인 구금방식, 특히 개방형 교도소의 사례는 김형주,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과 구금방식,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 203-235면 참조.

보면서 엄격한 교도소 규율을 강제하지만, 포용적인 방식은 수용자를 보호와 후원이 필요한 약자로 보고 느슨한 규율을 통해 수용자를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

첫째, 배제하는 방식은 폐쇄형 교도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폐쇄형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짜인 규율체계 안에 격리되고 분류된다. 수용자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노동과 활동을 해야 한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도착하는 즉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리 수용한다. 이후 평가센터에서 수용자에 대한 평가와 형기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치료와 활동을 진행한다. 각 교도소는 수용자를 수월하게 통제하기 위해 사동 혹은 사동 내의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교도소는 분류를 통해 수용자를 서열화하고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수용자의 복종을 이끌어 낸다. 또한, 교도소는 공간을 구획하고, 수용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세분화하여 그 속에 수용자를 편입시킨다. 수용자에게 시간은 정해진 채로 주어져 있을 뿐이다. 수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밥을 먹고, 노동하며, 정해진 시간에 취침한다. 수용자는 범죄행위에 대한 참회와 반성뿐만 아니라 근면한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핀란드는 포용적인 구금 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포용적인 구금 방식은 폐쇄형 교도소의 일부 사동(여성과 아동 거주 사동, 약물문제 수용자 거주 사동)과 개방형 교도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아동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조건과 방식은 사회의 그것과 거의 부합한다. 특히 아동의 조건은 교도소 당국의 규율에 앞서 고려된다. 다음으로, 약물문제가 있는 수용자 역시 별도의 사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활동과 시간을 보장받는다. 외부와 협력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수용자는 여기에 참여해 자신의 자율성을 키워간다. 이와 같은 방식은 '중간처우시설'인 개방형 교도소에서 두드러진다. "개방형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일반 주택과 비슷한 외관의 숙소에서, 사복을 입고 (필요할 경우) 외부로 나가 노동하고 교육을 받는다. 수용자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임대료를 내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한다. 수용자는 제한적이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 시간에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이나 소풍을 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2개월마다 3일 간의 휴가를 갖는다."[27]

27) 김형주,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과 구금방식,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 2018, 228면.

나.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구금 방식의 비교

핀란드 교도소에서 구금 방식은 수용자를 외부로부터 얼마나 배제하는가 혹은 포용하는가에 따라 일정하게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이 같은 비교는 상대적이다. 배제하는 구금 방식 역시 일과 시간 이외에 수용 거실에서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양질의 식단과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흡연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포용하는 구금 방식에 비해 격리와 규율의 정도가 높을 뿐이다.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을 비교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의 비교[28)]

구분	배제하는 방식	포용하는 방식
시설과 보안	담장과 철책을 통한 완전한 격리	경비가 없는 일반주거시설
규율의 정도	강함	약함
활동의 종류와 방식	한정적, 내부 활동	다양함, 외부 활동
수용자의 자율성	적음	많음
수용자의 외부 접촉	외부 접촉 제한	더 많은 외부접촉 허용
수용자에 대한 입장	훈육이 필요한 위반자	보호와 후원이 필요한 약자

<표 3-2>에서 보듯이,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은 시설과 보안, 규율의 정도, 활동 종류, 수용자의 자율성, 수용자의 외부접촉, 수용자에 대한 입장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수용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보안이 엄격한 시설에서 강한 규율을 통해 수용자를 훈육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반면, 포용하는 방식은 경비가 없는[29)] 일반주거지와 같은 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경비가 없다는 사실과 외부 혹은 수용자 상호 간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구금 방식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배제하는 방식은 수용자를 훈육이 필요한 위반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포용하는 방식은 수용자를 보호와 후원이 필요한 약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핀란드는 중범죄를 저

28) 이 표는 형사제재본부에서 제공하는 각 교도소의 전경사진과 교도소 규칙을 바탕으로 그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29) 시설과 수용자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뿐이다.

지른 수용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기를 채우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수용자는 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차이[30]

구분	배제하는 방식	포용하는 방식		
	폐쇄형 교도소	개방형 교도소	엄마 아동(개방형)[31]	약물(폐쇄형)
외관	담장과 철책 위압적	전형적인 주택 아파트형	전형적인 주택	폐쇄형 교도소 내부 별도 구역
의복	수용자복	사복	사복	수용자복
운동	주 3회 2시간 여가 활동, 주 1회 1시간 야외 운동(뻴소교도소)	하루 약 7시간 자유 시간 (수오멘린나 교도소)	하루 최소 1시간 야외활동	하루 1시간 야외활동 (헬싱키 교도소)
이동	이동 제한 무단 이동 금지	밤 10시 이전 이동자유, 허가 후 외부 외출 (께라바 교도소)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이동 가능	폐쇄형의 다른 수용자 보다 1시간 늦게 기상 하루 3-4시간 정도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과 야외활동 참여 흡연
소통	수용자 상호 간 의사소통 금지	수용자 상호 간 의사소통 허용	수용자 상호 간 의사소통 허용	
자유	물품 소유 제한 흡연	흡연,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사회활동, 쇼핑	낮잠과 휴식 아동의 조건이 결정	
식사	공동 취식	일부 개방형 수용자 직접 조리	수용자 직접 조리	
통제	분류, 시간표, 징계	분류 없음, 시간표, 징계 있으나 징벌방 없음	분류 없음, 시간표, 징계 있으나 징벌방 없음	

<표 3-3>은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구금 방식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배제하는 방식과 포용하는 방식은 시설의 외관, 의복, 이동, 소통, 자유, 식사, 통제, 운동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다. 다만 약물 수용자의 경우 폐쇄형 교도소에 거주하고

30) 이 표는 폐쇄형 교도소인 뻴소 교도소 일과표와 개방형 교도소인 수오멘리나 교도소 규칙과 DAY ORDER, 께라바 교도소 규칙, 바나야 (여성)교도소 규칙, 헬싱키 교도소의 약물 사동 자료(C41 & C42)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뻴소 교도소 일과표는 Rauhamaa, Olli-Pekka. (2005). Vankien tiedontarpeet ja tiedonhankinta, Tampereen yliopisto, Informaatiotutkimuksen laito, 26-27면 참조.

31) 폐쇄형인 함멘린나 여성 교도소에도 엄마와 아동이 거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수는 적다. 엄마·아동은 주로 바나야 개방형 교도소에 거주한다.

있어서 외관과 의복, 소통과 식사, 통제와 운동에 관한 부분은 폐쇄형 교도소와 차이가 없다. 하지만 약물 수용자는 폐쇄형 교도소의 사동 내 별도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폐쇄형 교도소의 수용자보다 1시간 늦게 기상하여 3-4시간 동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더 많은 자유 시간과 활동을 누린다.

<표 3-3>에서 보듯이, 배제하는 방식은 수용자에게 수용자 복을 입히고, 이동과 의사소통, 물품 소유를 제한하고 분류와 시간표, 징계를 통해 수용자를 통제한다. 하지만 포용하는 방식은 배제하는 방식과 달리 수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와 시간을 허용한다. 개방형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사복을 입고 다른 수용자와 소통할 수 있으며 외부로 출입할 수 있다. 그/녀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 1회 외부 상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개방형 교도소는 사회의 일반 조건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시설의 외관과 구조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형태이고, 일과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수용자는 자유 시간을 갖는다. 물론 개방형 교도소도 짜인 시간표가 있고, 물품 소유에서도 제한이 있다. 하지만 개방형 교도소의 수용자는 일과표를 스스로 조직할 수 있고 폐쇄형 교도소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물품을 소유할 수 있다.

이처럼 배제하는 구금 방식과 포용하는 구금 방식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물론 두 방식 모두 특정한 시설에서 일정한 규율체계를 기반으로 수용자를 격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수준은 매우 다르다. 핀란드의 교도소는 이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을 교묘하게 접합하여 유지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금 방식은 의도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가 구금을 통해 의도했던 것은 인도주의와 정상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수용자의 완전한 사회 복귀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과연 수용자는 구금 공간에서 과거의 사고와 습관을 교정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받아 사회로 나가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수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금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V. 구금의 한계: 수용자 반발, 내부 분할, 자의적 제재의 돌출

1. 제도화에 대한 수용자의 저항

가. 탈 활동: 수용자의 자기 생성의 기획

최근 핀란드 교도소에서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체 수용자 중 약 54%의 수용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46%의 수용자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수용자는 생산 노동에 가장 많은 13%의 수용자가 참여하고 있고, 건물관리(10%)와 민간노동(5%)이 뒤를 잇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수용자는 8%, 기타활동은 15%였다. 기타 활동은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재범방지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사회 복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용자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32%의 수용자가 아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11%가 조사와 재판을 위해 검찰과 법원에 출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질병을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3%로 나타났다. 그나마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용자의 비율은 2009년의 53%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수용자의 절반이라는 상당히 많은 수의 수용자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형사제재본부는 직원 수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교도소에서 활동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용자가 가진 복합적인 문제와 교도소 안전 등의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용자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교도소에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수용자의 수는 증가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고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2>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주중 평균 활동의 비율을 보여준다.

32) RISE, 주 11)의 보고서, 19면.

〈표 4-2〉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수용자 전체 비율(%) 2005년-2017년

년도/구분	질병	참여 없음	기타(출정 등)	총계(%)
2005	5	21	20	46
2006	5	28	11	44
2007	5	37	9	51
2008	5	37	9	51
2009	5	38	10	53
2011	4	38	9	51
2012	4	36	8	48
2013	3.3	38.4	8.1	47.8
2014	4	39	8	52
2015	4	35	9	48
2016	5	37	6	48
2017	3	32	11	46

※ 출처: RISE, 2009: 38; RISE, 2017: 20을 재구성

<표 4-2>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수용자는 2005년 21%에서 점차 늘어나 2014년에 39%로 정점에 이른 다음 약간의 하향세를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30%대 중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질병과 기타활동을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수를 더하면 그 비율은 더 증가한다. 여기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용자 비율과 질병과 외부 출정을 나가는 수용자 비율을 합하면 비율은 약 50%까지 상승한다. 이 비율은 교도소 노동과 교육, 재활을 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수용자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상승을 거듭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약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2006년 교도소 개정 이후 인도주의와 정상성의 원칙이 교도소법에 명문화되면서 수용자의 권리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수용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교도소는 인도적 원칙에서 이를 고려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반대로 교도소에서 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수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핀란드는 인도적 조치들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1990년대

말부터 특히 약물에 관해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곧 수용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교도소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용자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나. 구금 탈주: 탈옥과 무단이탈

핀란드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탈옥하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만약 수용자가 탈옥하면 그는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한, 개방형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무단으로 이탈한다면 최대 10일 동안 징벌방에 유치된다. 개방형이나 재활 기관에서 무단이탈은 탈옥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탈옥이나 무단이탈이 발각되면 당국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형사제재본부는 수용자의 탈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옥의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한다.[33] <표 4-3>는 지난 10여 년간 폐쇄형 교도소의 탈옥 건수와 개방형 교도소와 재활기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건수를 보여준다.

<표 4-3>에서 보듯이 지난 10년 동안 매년 탈옥 건수는 8건에서 17건이었다. 탈옥 부분에서 '폐쇄형에서 탈옥'은 폐쇄형 교도소라는 장소에서 탈옥이 아니라 폐쇄형 교도소에 소속되어 있는 수용자의 탈옥을 의미하고, '교도소 내부로부터 탈옥'은 폐쇄형 교도소에서 탈옥을 의미한다. 총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있거나, 중복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폐쇄형에서 탈옥한 수용자의 수는 2008년 16건에서 2017년 8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탈옥은 교도소 밖에서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외부 작업장 혹은 교도소 직원이나 다른 직원의 계호 중에 발생했다.[34] 개방형 교도소의 무단이탈자 수는 2000년 중반부터 증가하여 2011년에 82건까지 증가했다. 그 이후로 무단이탈자 수는 다시 10년 전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에는 개방형 교도소에서 63건의 무단이탈이 발생했다. 재활기관에서 무단이탈 역시 2015년 29건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에 다시 10건으로 줄었다.

---

33) Rikosseuraamuslaitos, Karkaamisetjaluvattapoistumiset. https://www.rikosseuraamus.fi/fi/index/taytantoonpano/jarjestysjaturvallisuus/karkaamisetjaluvattapoistumiset.html. ,2018. 12. 5 검색.

34) RISE, 주 11)의 보고서, 18면.

〈표 4-3〉 탈옥과 무단이탈 건수 2008년-2017년

구분	탈옥			개방형교도소에서 무단이탈	재활기관에서 무단이탈
년도	총계	폐쇄형 교도소에서 탈옥	교도소 내부에서 탈옥		
2008	16	14	8	55	9
2009	17	13	1	67	4
2010	12	10	1	54	9
2011	12	7	1	82	5
2012	17	11	6	62	15
2013	15	9	5	56	16
2014	14	13	7	39	9
2015	10	8	2	42	29
2016	10	9	4	55	9
2017	8	7	5	63	10

※ 출처: RISE, 2017: 39

수용자의 탈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개방형 교도소에서보다 폐쇄형 교도소에서 탈출이 적은 것은 보안수준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폐쇄형 교도소에서 탈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폐쇄형 교도소의 수용자 역시 외부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탈옥 사례가 외부로 출입할 때 발생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개방형 교도소에서 무단이탈은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핀란드에서 개방형 교도소의 구금은 폐쇄형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방형 교도소의 수용자는 폐쇄형 교도소의 수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외부로 출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무단이탈이 발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수용자가 개방형 교도소에서 이미 외부출입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조건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무단이탈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특히 개방형 교도소의 수용자는 면밀한 판단에 의해 선택받아 이송되어온 수용자이다. 물론 수용자의 개별적 일탈 혹은 범죄성도 문제겠지만, 개방형 교도소의 구금 방식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이탈을 시도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현황은 핀란드가 표방하고 있는 인도주의와 정상성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핀란드는 교도소의 조건을 개선하고 수용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처우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 역시 수용자의 자율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수용자는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2. 구금에 포함되면서 배제되는 수용자

가. 젊은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에 대한 폭력

일반적으로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계획된 일과에 따라 통제된 생활을 한다. 하지만 교도소 역시 수용자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잦은 다툼과 폭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수용자들 상호 간의 폭력이 때때로 힘없는 수용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일어난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힘없는 수용자는 어리거나, 가족이나 돈이 없거나,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교도소 내의 소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 간의 성폭력은 큰 두려움이 되고 있다.

2007년의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의 후이띠넨 교도소에서 강간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많은 수용자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조사에 응한 수용자 중 9명은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석방 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석방된 수용자들은 석방 후에도 이성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만약 교도소에서 동성 성폭력을 경험하기 전에 이성과 경험이 없었던 경우 이런 어려움은 더 가중되었다.[35] 이것은 비단 이성과 관계를 맺는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어떤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지속해서 성폭력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그가 사회에서 적응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일부 수용자는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닌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 특히 젊은 수용자는 이 같은 관계에 쉽게 참여한다. 교도소는 젊은 수용자에게 가혹한 곳이다. 젊은 수용자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수용자는 문제 해결의 대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상

35) Ekunwe, I, Gentle Justice: Analysis of Open Prison Systems in Finland. A Way to the Future?, Tampere University Press, 2007, 111면.

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성을 상납하는 수용자의 목적은 경제적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교도소에서 좀 더 편한 생활을 하자는데 있다. 그들은 성을 상납하고 상대로부터 담배와 사탕, 의약품과 음식 등을 대가로 얻는다.

> "나는 내가 원하는 경우 섹스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돈이 없는,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원하는 많은 어린 수용자들이 있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의 다리 사이에 뭔가가 들어오는 것을 즐긴다. 그들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36]

이 같은 현실을 형사제재본부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는 18세 미만의 젊은 수용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8세 미만 수용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인 수용자와 분리되어야 한다.[37] 만약 젊은 수용자가 특정한 요구에 따라 성인 수용자와 공동생활을 한다면 교정공무원은 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슷한 사례는 여성 수용자에게서도 일어난다. 조사에 따르면, 바싸 교도소에서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가 대부분인 사동의 일부분에 거주하지만, 일부 여성 수용 거실은 화장실의 문이 없거나, 남성 수용 거실에 비해 방의 크기가 작았다. 또한, 여성 수용자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었고, 체육관과 도서관은 일주일에 두 번밖에 갈 수 없었다. 여성 수용자는 수용 거실을 벗어나 이동할 때 남성 수용자가 창문을 통해 희롱을 했고 그 때문에 외출을 꺼리기도 한다.[38] 여성 수용자가 남성 수용자보다 권리가 제약되는 이유는 남성 수용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 관련 시설이 충분히 갖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성 수용자가 먼저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을 이용하면 다음 시간에 여성 수용자가 이용한다. 분리수용 원칙에 따라 남녀를 구분해야 하지만 남성 수용자의 수는 많고 시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수용자가 차별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핀란드 교도소가 내린 결론은 젊은 수용자와 성인 수용자,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를 가능한 한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정공무원은 여성 수용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부적절한 행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36) Ekunwe, I, 주 25)의 논문, 112면.
37) Vankeuslaki, 2015: 5장 2조.
38) EOAK, 주 28)의 자료, 11면.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담장으로 가려진 곳에서 실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들을 분리하는 것이 인도적인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형사제재본부가 내세우는 정상성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회에서 남녀는 강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상성의 원칙을 표방한다면 분리의 원칙이 여기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도소가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욕망을 충족할 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부족하며, 공간적으로 밀폐되어 있어서 이런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도소가 수용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도를 마련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외부인들이 지속해서 수용자와 접촉하게 한다면 혹은 공간을 열고 함께 거주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덴마크의 한 개방형 교도소에서 남녀 수용자는 한 건물에서 부엌과 응접실 등의 공간을 함께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남성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가 이같이 공간을 함께 이용하며 생활하는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 “여자와 남자가 함께 생활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같은 성별끼리 구금되는 곳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덜 발생하거든요. 문제가 오히려 많지 않아요.”[39]

나. 이민자 수용자에 대한 차별

핀란드에서 이민자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민자 수용자는 대부분 핀란드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핀란드 시민권을 얻었거나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도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이민자 수용자는 크게 종교, 언어, 가족 접견 및 거주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민자는 교도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통보받더라도 언어상의 문제로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미껠라 교도소에서 이민자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교도소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

39) 덴마크 ‘열린 교도소’: 교도소의 틀을 깨다, KBS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016.03.19.

통보받지 못했다(EOAK/4397/2016: 17). 또한, 바싸 교도소에서 이민자 수용자는 교도소의 안내를 도와줄 직원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해 교도소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했고, 교도소에 스카이프(Skype) 화상 통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외에 자신의 가족 및 친지와 연락할 길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다.[40] 또 다른 이민자 수용자는 교도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직원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통역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녀는 몸이 아파 의사의 진찰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간호사를 통해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41]

이 같은 사례는 이민자 수용자가 언어 문제로 교도소 내의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가 요청하면 통역관을 통해 수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 한 수용자는 통역관을 요청했지만 핀란드어를 배우라는 대답만 들었으며, 심지어 핀란드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해주지도 않았다고 토로한다.[42]

이와 같은 어려움은 제도적 미비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이민자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의 경멸적인 시선이나 태도를 그대로 경험한다.[43] 이민자 수용자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의 눈빛과 몸짓에 더 민감하다. 직원의 차별은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은연중에 수용자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이민자 수용자 중에서도 특히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더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 “나는 변호사 접견 후 접견실을 나가려고 했다. 그때 나는 변호사와 함께 있었다. 나는 여러 번 소리쳐 사람을 불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다른 문을 통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문을 열어주었던 어떤 여직원이 나에게 말했다. ‘깜둥이(Neekeri)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나는 그 직원에게 당신은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40) EOAK, 주 28)의 자료, 13-14면.
41) EOAK/4397/2016: 41면.
42) EOAK, 주 35)의 자료, 40면.
43) EOAK, 주 35)의 자료, 7면.

말했다. 그 직원은 나에게 되물었다. ‘그러니까 깜둥이,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나는 방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친구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라고 말했다(수용자 O).”[44]

핀란드어로 네케리(Neekeri)는 영어로 니그로(Negro) 혹은 니거(Nigger)를 의미한다. 우리말로 검둥이 혹은 깜둥이를 칭하는 이 말은 대단히 모욕적인 단어이다. 이민자 수용자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는다. 아프리카계 이민자 수용자의 주장이나 요구는 교도소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무시된다.

이민자 수용자는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차별을 겪는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이민자 수용자들은 핀란드인 수용자들과 떨어져 무리지어 식사한다. 식당에서 가장 밝고 좋은 자리는 핀란드인 혹은 백인들의 자리이다. 가장 구석에 어두운 자리는 이민자들의 자리이다. 집시들의 피부는 하얗지만, 백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러시아인 역시 ‘흑인’ 이민자 수용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앉는다. 한 수용자는 식당의 자리 배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이민자 수용자는 자신이 “이민자들 사이에서 식사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단호히 말했다.[45] 이는 비단 식당의 자리배치 문제만이 아니다. 이민자 수용자는 수용 거실 안에서도 다른 일반 수용자들에게 배척당한다.

“내가 한 수용거실로 배치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핀란드인 수용자들이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아’, ‘안돼, 안돼’, ‘왜 흑인을 우리 방으로 데려온 거야?’, ‘뭐야?’. 나는 그런 존재이다. 무슨 냄새 때문도 아니다. 그놈들이 그런 놈들이다. 지독한 놈들.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수용자 B).”[46]

이처럼 형벌은 단순히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소외와 차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금형을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

44) Huhta, H, (2012), Maahanmuuttajana suomalaisessa vankilassa, etnografinen tutkimus vankila-arjesta, Rikosseuraamuslaitoksen monisteita 5/2012, 45면.

45) Huhta, H, 주 38)의 논문, 46면.

46) Huhta, H, 주 38)의 논문, 49면.

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범죄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과 폭력, 그리고 차별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자유의 박탈' 이상의 것을 범죄자에게 가하도록 허락했는가? 무엇이 이를 정당화하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특히 핀란드처럼 개방적이고 인도적인 교도소를 표방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구금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3. 분자화된 억압과 자의적 제재: 재량의 개입과 남용

교정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교도소 규율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다. 수용자의 복장, 물품 관리, 서신, 접견, 노동, 형기 계획 등의 분야에 조건과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판단과 허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표 4-4>는 교도소 법과 교도소 규칙이 정한 규정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교도소 당국의 재량은 크게 용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당국 중심적인 판단을 설정하고 있는 지점에서 생겨난다.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수용자에게 사복을 허용하지만 '신뢰할만한' 수용자여야 하고,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을 경우 수용자는 처벌받는다. '신뢰할만한'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은 교정공무원이 한다. 애초에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표 4-4〉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 교도소법과 교도소 규칙

용어 자체가 추상적인 경우
▸ 신뢰할만한 수용자는 사복을 입을 수 있다. ▸ 수용자는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특정 단서를 달았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 당국은 범죄 예방의 목적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서신을 검열을 할 수 없다. ▸ 접견 방문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 접견 방문자가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단에 따라 특별한 감시 하에 접견한다. ▸ 특정 상황에서 수용자는 밖에서 일하거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수용자는 수용거실에 비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의 물품만을 소유할 수 있다.

당국 중심적인 판단을 설정한 경우
▸ 특정 수용자는 자유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에서 제외될 수 있다. ▸ 18세 이하 수용자는 개방형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면 보내야 한다. ▸ 범죄 예방, 교도소 질서 유지, 수용자들의 안전 보장 차원에서 통화가 청취될 수 있다. ▸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서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용자는 교도소 직원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재량은 특정 조건을 규정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서신 검열에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접견에서 '특별한 감시'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수용자는 '특정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 또한, 당국은 특정 수용자에 대해 다른 처우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최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을뿐더러 이것 역시 교정공무원이 판단한다. 교도소가 통제에서 고려하는 안전과 보안도 마찬가지다. 교도소 소장은 언제든 질서유지와 보안을 이유로 수용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직원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는다는 규정은 자의적인 징계를 남발한 우려가 있다.

이처럼 교도소에서 수용자에 가해지는 통제는 공식적인 징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용자가 아무리 교도소 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잘 따른다고 하더라도 당국의 재량에 따라 그들의 처우는 달라질 수 있다. 당국의 재량은 이 부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이 발견되었다.

〈표 4-5〉 교도소에서 재량 남용 사례

미껠라 교도소의 사례
▸ 수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 수용자에게 아동 만남을 허용하지 않는다. ▸ 사소한 잘못에도 가혹한 징벌을 부과한다. ▸ 징계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바로 징벌방으로 유치한다.
바싸 교도소의 사례
▸ 수용자를 활동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하나의 징계로 사용하고 있다. ▸ 수용자의 소변검사 거부에 대해 징계를 부과했다.

▸ 약물 소유 의심 수용자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처분에서 수용자의 변론을 듣지 않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했다.
싸따꾼따 교도소의 사례
▸ 징계가 결정되는 조건과 과정이 불확실하다.

※ 출처: EOAK/4397/2016: 3-5; EOAK/2705/2017: 21-28; EOAK/3733/2017: 3

<표 4-5>에서 보듯이 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를 거칠게 다루거나 수용자의 재판 준비나 접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징계에서 적절한 징계 절차는 무시되고 있었으며, 기준조차 모호했다. 징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징계처분을 부과할 때 수용자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는 것과 교도소 활동에서 수용자를 제외하는 것을 징계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도소에서 징계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도소는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공간이다. 따라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힘들다. 교정공무원이 재량을 쉽게 남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교정공무원의 재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감독 되어야 한다. 특히 징계의 절차와 기준은 구체화해야 하고, 수용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은밀하고 자의적인 조치들이 교도소를 떠받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이다. 교도소는 이 비공식적 기술을 통해 고유한 권력을 행사한다. 사실 교정공무원의 재량은 교도소의 규율체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교도소의 일상에서 수용자는 늘 규율을 행사하는 혹은 규율 행사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교정공무원들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VI. 구금의 재편: ‘실험교도소’의 조직과 ‘탈구금’의 전망

사회적 인간으로서 개인은 다양한 일상 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정립하고 다른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의 활동이 항상 타인 혹은 사회의 요구와 조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들과 불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불화가 극단적으로 표출되었을 때 사회는 해당 개인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한다. 제재는 그들을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삶과 공동체와의 단절, 그것은 과거에 신체형과 추방으로 행해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감옥을 통한 구금으로 작동한다. 구금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획된 공간에 강제로 배치하여 사회와 격리하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절단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금이 감옥이라는 장치를 통해 작동하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구금은 높다란 감옥 담장 너머로 사라졌으며, 구금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생산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구금을 통한 형벌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해 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구금은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죄율과 재범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구금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핀란드의 감옥제도에 주목했다. 특히 핀란드의 감옥에서 구금의 내용과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구금의 한계를 분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핀란드의 구금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 우리는 구금에 대해 다시 성찰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본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핀란드는 배제하는 구금 방식과 포용적인 구금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한국에 비해 포용적인 구금 방식을 보다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개방형 감옥에서 두드러지는데, 개방형 감옥에서 죄수는 폐쇄형 감옥에 비해 많은 자유와 권한을 누리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도적'이라고 알려진 핀란드 감옥 제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감옥에서 죄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때로는 탈옥하기도 한다. 지난 10여 년간 감옥에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죄수는 전체 죄수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매년 8명에서 17명의 죄수가 폐쇄형 감옥에서 탈옥하거나 55-82명의 죄수가 개방형 감옥에서 무단이탈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핀란드의 구금 방식이 여전히 죄수의 주체성을 억압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특히 개방형 감옥은 폐쇄형 감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생활 조건과 자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단이탈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구금 방식 역시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핀란드는 감옥의 조건을 개선하고 죄수를 인도적으로 처우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죄수를 사회복귀로 이끌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 역시 죄수의

주체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죄수는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구금은 또 다른 죄수, 감옥에 포함되면서 배제되는 죄수를 생산한다. 감옥 안에서 죄수는 여러 가지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젊은 죄수는 감옥 안에서 동성 간의 강압적인 성폭력 혹은 합의된 성 거래를 하고 있으며, 여성 죄수는 남성 죄수에 비해 좋지 못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 죄수는 직원들과 다른 동료 죄수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특히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계 이민자 죄수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이민자 죄수는 핀란드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시판의 정보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의 요구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묵살되었다. 이에 대해 형사제재본부는 엄격한 분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핀란드가 표방하고 있는 정상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금의 문제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 구금을 통한 형벌이 실패'했거나, '구금을 지양하는 핀란드식 형벌 역시 불완전하다'라면 구금은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핀란드 개방형 감옥의 한계까지 극복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1. '실험교도소'의 조직

오늘날 한국 사회도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복지제도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특정 소수자들을 수용을 통해 관리해왔다면, 최근에는 사회 내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다. 사회와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접속을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사회적 역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탈시설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군인들 역시 일과 시간 외에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도소 역시 이 같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격리보다 사회 내 처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수용자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 그들은 시설 내에서조차 규정을 어기고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교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연구가 제안하는 것은 일종의 '실험교도소'의 조직이다.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정개혁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지만 현실론과 이상론의 대립적 관점 속에서 파편화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대단히 실천적으로 접근한 연구 역시 현실에서 별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제안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정개혁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세력 혹은 사법당국의 확실한 방향설정과 의지 부족, 개혁의 불확실성, 관행과 현실적 한계(재정과 법률정비, 조직개편과 교정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 등)가 그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보안 대 교화, 질서 대 인권, 배제 대 통합, 국가 독점 대 민영화의 딜레마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47]

이 연구가 제안하는 '실험교도소'는 그 같은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실험교도소'는 분명한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실험하는 것이다. 그것의 최종목표는 폐쇄형 교도소의 축소와 개방교도소의 확대에 있다. 소규모 교도소에서 특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분야(보안, 출역, 계호, 전화, 서신, 접견 등)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그것을 개방형 교도소로 발전시키고, 점차 개방형 교도소의 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니와 '교정당국이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기술들을 체계화했지만 결국 재범방지에는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정교해진 구분과 체계가 오히려 비행을 생산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해소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실험교도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실험교도소'의 목표는 응보가 아닌 예방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한다. 둘째, '실험교도소'의 수용대상은 중범죄자와 경범죄자(소년, 음주나 약물 문제 수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핀란드의 개방형 교도소는 주로 경범죄자와 가석방 대상자를 위한 곳이지만, 경범죄자뿐만 아니라 중범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들 역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실험교도소'의 규모는 작아야 한다. 적은 수의 수형자를 더 많은 수의 교

47) 한인섭, 한국 교정의 딜레마와 당면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40권 1호, 2000 참조.

정공무원이 혹은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독립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거대한 교도소에서 여러 사동과 뒤섞여 운영되면 공간 자체가 주는 위압감과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분리이다. 따라서 넷째, ‘실험교도소’는 치료와 재활, 노동과 교육의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료와 재활 기능은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 기관화하거나, 위탁운영 등을 통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정 당국이 이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 없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실험교도소’에서는 시도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핀란드 역시 교도소에서 재활 기능의 분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다섯째, ‘실험교도소’의 공간은 다르게 구축되어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사동 구조, 수용 거실을 바꿔야 한다. 똑같은 구조와 하얀 벽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것은 교정공무원에게도 이득일 것이다. 수용자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공무원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도 획일적인 건물에서 진행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네모반듯한 공간이 아닌 동그랗거나 세모난 공간, 천정이 높거나 낮은 공간, 정원이나 놀이 시설 공간, 베란다, 음악을 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공간, 요리를 배우고 팔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다면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제공되는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 공간변형이 어렵다면 적어도 벽면이라도 다채롭게 꾸며져야 한다. 사동 복도에 액자를 거는 것도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고, 수용자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섯째, ‘실험교도소’는 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공간의 변형만으로는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한계가 있다.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외부와 통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기초교육과 직업교육)과 노동(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봉사활동 포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핀란드 개방형 교도소에서도 수용자는 사복을 입고 차를 몰고 시내를 드나들 수 있고, 외부에서 자신의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가족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 또한, 외부 단체와 기관은 석방되기 전부터 수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출소 후 삶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교

도소'는 사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고, 외관 역시 사회의 그것과 비슷해야 하며, 수용자의 자유로운 외부통근이 보장되고 외부에서도 폭넓게 교도소 내부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실험교도소'에서 수용자는 사복을 입어야 한다. '수용자 복'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낙인의 표지이다. 수용자 복은 수용자를 사회인에서 수용자로 전환시키고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관리와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수용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용자 복을 입고 수용자라는 정체성을 내면화한 수용자가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험교도소'는 사회인을 수용자로 전환하는 곳이 아니라, 수용자를 사회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안된 장소이기 때문에 사복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덟째, '실험 교도소'는 수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최근 영월 교도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자치제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비단 자치제가 아니더라도 수용자가 사복을 입을 수 있고, 담배와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자신을 먹을 음식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해먹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조직해 관리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교도소와 비슷한 환경에서 수용 생활을 했던 장애시설 장애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이다. 많은 탈시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온 후 가장 좋았던 점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꼽고 있다. 만약 수용자에게 자신의 생활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면 어떨까? 교도소는 이미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사회적 자유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생활은 그들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는 수용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당연히 사건·사고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책임은 축소되어야 한다.

권한의 확대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래 사례는 그것을 보여준다.

> "교도관과 함께 저의 오랜 옷가지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열었는데, 이것은 교도관 자신으로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지만 저는 전에는 정말

결코 해보지 못한 일이 되었어요. 즉 교도관은 나를 보며 가위를 건네어 주고서는 소지품 꾸러미를 가위로 끊고 이것저것 꺼내 보라고 하더라고요. 교도관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자기 일을 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완전히 기절초풍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제가 인간으로 다시 대접받기 시작하는 최초의 일이었거든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일을 해냈어요. 이토록 소박하며 간단한 행위와 제스처로 인하여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지요. 형벌제도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거든요."[48)]

위의 사례는 영국 수용자의 사례로 다루기 힘든 수용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특수부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날카로운 가위가 자신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교도관이 있을 때 날카로운 물건이 수용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그것으로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용자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수용자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고, 처음으로 인간답게 대접받고 있음에 감동했다. 심지어 그 역시 일반 교도소에서 다루기 힘든 수용자로 분류되어 '특수부 교도소'으로 이송되어온 사람이었다. 이처럼 구금의 방식이 수용자를 존중하고 그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을 때, 수용자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 다시 말해 구금이 억압적인 방식에서 개방적인 방식으로 바뀐다면 오히려 수용자가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교도소'의 조직은 수용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수용자가 자기 삶을 조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수용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수용자는 규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고,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소년, 음주나 약물 문제 수용자, 경범죄자, 그리고 규정을 잘 따르는 중범죄자 등 일부 수용자를 대상으로 차근차근 개방형 교도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48) 문성호, 주 23)의 논문, 115면.

2. ‘탈구금’의 가능성

‘실험 감옥’을 통해 개방형 감옥을 확대하고 폐쇄형 감옥의 수를 줄인다면, 그리고 더 이상 감옥을 신축하지 않는다면 감옥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재편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구금의 해체이다. 구금의 해체는 형벌을 전혀 다른 식으로 부과하거나 형벌 집행의 공간을 밀폐된 건물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폐지론자인 크리스티는 『외로움과 시설을 넘어서』(2017)라는 책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삶을 조직해가는 노르웨이의 한 산골 마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9]

> “우리는 그가 아이들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근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그가 재판 후에 감옥에 구금되는 것보다) 비다로슨(마을이름)이 그에게 더 적당한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도착 직후에 Z(그)가 엄마들 중의 한 명에게 저녁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을 것이다. 전날 밤 그가 그녀 아이들의 침실 벽장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엄마의 건조한 평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새로운 마을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
> 우리는 그의 저녁 행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폭동에 가까운 강력한 항의를 차단하며, 우리는 저녁 동안에는 집에 있거나, 만약 어딘가를 가야 한다면 우리의 동료와 함께 가도록 그에게 강요했다. 그것은 4일 동안, 더 정확히 말해 4일 밤 동안 유효했다. 5일째 밤에 그는 카페에서 현금지급기를 열다가 잡혔다…그나 우리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우리는 그를 감옥까지 데려다 주었다. 우리가 그에게 말을 했을 때, 그는 말 그대로 움츠러들었고, 우리 또한 그랬다. 그는 감옥에 가는 대신 마을에 머물도록 허용되었다. 그는 그런 지위를 인정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으로 갔다가 2주 쥐에 마을로 되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었다.”[50]

크리스티는 아이들을 추행한 장애를 가진 23살 젊은이가 감옥 대신 비다로슨

49) Christie, N, 윤수종·강내영 옮김, 외로움과 시설을 넘어서, 울력, 2017.

50) Christie, N, 주 63)의 자료, 40-45면.

(Vidaråsen)이라는 마을로 보내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젊은이는 마을에서 다시 현금지급기에 손을 대 감옥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몇 달을 지내다 다시 다른 마을로 옮겨졌다. 그는 결국 감옥으로 보내졌지만, 어린 소녀가 성적으로 학대받아 살해되어 노르웨이 전역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을 때 아동을 추행한 범죄를 저지른 그가 구금형이 아닌 (대안적) 마을로 보내졌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다. 물론 아주 작은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상상력은 구금 대안을 생각하는데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의 감옥제도 역시 범죄자를 밀폐된 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개방형 감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폐쇄형 감옥을 줄여나가고, 중범죄자들 역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을 배워가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핀란드 교도소법, 옴부즈맨 보고서, 형사제재본부 보고서 및 기타자료

C41 & C42.

DAY ODER.

393/2015, Laki vankeuslain muuttamisesta(Vankeuslaki, 2015).

EOAK/2705/2017, TARKASTUS: VAASAN VANKILA.

EOAK/4397/2016, TARKASTUS: MIKKELIN VANKILA.

EOAK/3733/2017, TARKASTUS: SATAKUNNAN VANKILA, KÖYLIÖN YKSIKKÖ.

RISE, Criminal Sanctions Agency Statistical Yearbook 2014, 2014.

RISE, Criminal Sanctions Agency Statistical Yearbook 2017, 2017.

RISE, Yhdistymisen aika RIKOSSEURA AMUSALAN VUOSIKERTOMUS, 2009.

교도소규칙

2016, Helsingin vankilan järjestyssääntö.

2014, Pelson vankilan järjestyssääntö.

2016, Suomenlinnan vankilan järjestyssääntö.

2017, Vanajan vankilan järjestyssääntö.

미디어 및 기관 자료

A closer look at Finland's 'open prisons', France 24 Focus, 2018.05.18, https://www.youtube.com/watch?v=0P28uBM0ryU. 2018. 11. 7 검색.

덴마크 '열린 교도소': 교도소의 틀을 깨다, KBS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016.03.19. 2018. 11.13 검색.

These Prisoners Have Their Own Keys, Therapy Horses, And Leave Prison Every Day, NBC News, 2017.10.18, https://www.youtube.com/watch?v=35QL080lkAw. 2018. 11. 7 검색.

Rikosseuraamuslaitos, Rikollisuuden ja rikosten uusimisen vaheneminen laskivat rikosseuraamusasiakkaiden maaraa. 2015. 3. 26. http://www.rikosseuraamus.fi/fi/index/ajankohtaista/tiedotteetjauutiset/2015/03/rikollisuudenjarikostenuusimisenvaheneminenlaskivatrikosseuraamusasiakkaidenmaaraa.html, 2018. 8.18 검색.

Rikosseuraamuslaitos, Karkaamisetjaluvattapoistumiset. https://www.rikosseuraamus.fi/fi/index/taytantoonpano/jarjestysjaturvallisuus/karkaamisetjaluvattapoistumiset.html. ,2018. 12. 5 검색.

Rikosseuraamuslaitos. Vankilat https://www.rikosseuraamus.fi/fi/index/toimipaikatjayhteystiedot/vankilat.html. 2018. 11. 24 검색.

참고논문 및 단행본

김형주,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과 구금방식,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 2018, 203-235면.

김형주, 핀란드에서 구금 방식의 전환과 함의: 1975년-2015년, 교도소법 개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 2019, 249-283면.

문성호, 스트레인지웨이스 교도소봉기: 교도소운동의 지평, 사람소리, 2009.

_____, 감옥폐지주의, 인권복지연구, 2010, 87-108면.

제임스 리, 『샌퀸틴 교도소의 얼간이들』, 인문당, 1994.

최종고, 아시아법의 법계와 체계, 아시아법제연구, 법제연구원, 2004.

한인섭, 한국 교정의 딜레마와 당면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40권 1호, 2000.

Arkkitehdit MV oy, Oulun Vankila Rakennushistorian Selvitys, 2011.

Christie, N, 윤수종·강내영 옮김, 외로움과 시설을 넘어서, 울력, 2017.

Christie, N, A suitable amount of crime. Routledge, 2004.
Christie, N, Victim movements at a crossroad, Punishment & Society, 12(2), 2010.
Ekunwe, I, Gentle Justice: Analysis of Open Prison Systems in Finland. A Way to the Future?, Tampere University Press, 2007.
Goffman, E, Asylums: essays on the soocial situatio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1961.
Honkala, K, YK:n ihmisoikeudet vankiloihin!, Marraskuun liikkeen suomalaisen kontrollipolitiikan kritiikki, 1967-1972, 2011.
Huhta, H, (2012), Maahanmuuttajana suomalaisessa vankilassa, etnografinen tutkimus vankila-arjesta, Rikosseuraamuslaitoksen monisteita 5/2012.
Hulsman, L. H, 문성호·이승권 옮김,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 사람소리, 2009.
Mathiesen, T, The defences of the weak: A sociological study of a Norwegian correctional institution, Routledge, 2012.
Mathiesen, T, The politics of abolition. Contemporary Crises, 10(1), 1986, 81-94면.
Rauhamaa, Olli-Pekka, Vankien tiedontarpeet ja tiedonhankinta, Tampereen yliopisto, Informaatiotutkimuksen laito, 2005.
Von Hofer, H. & Lappi-Seppälä, T. & Westfelt, L, Nordic Criminal Statistics 1950-2010, Summary of a report. 8th revised edition. Stockholms universitet. Kriminologiska institutionen, Rapport 2012:2, 2012.

참고 사이트

www.prisonstudies.org

Contradiction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Embrace of Inmates : Focusing on the Mechanism and Limit of Imprisonment in Finland

Kim, Hyung-ju*

The aim of the study is to rethink imprisonment through analysing the mechanism and limit of imprisonment in Finland. Nordic countries, especially, tend to avoid incarceration, prefer to deterrence than retribution, emphasis equality before the law. Finland, among the Northern countries, is notable for its the lowest proportion of the prison population, transforming their severe prison system to Northern Europe style system swiftly. In 2017, almost 34% of inmate are living in the open prison and they have much more liberty, for instance, smoking, using the internet, mobile phone and social media. Despite this ‘humane’ prison system, however, inmates occasionally refuse to participate programme of prion or they escape the prison. In addition, youth, female, and non-Finnish inmates are living in tougher condition than adult male prisoners or the Finnish inmate. The limits of imprisonment is not only found in the inmate world but also in the staff world. The staff tend to abuse their power due to obscure term of prison order and administrator-friendly policies. Thus, if the embracing imprisonment policy of Finland is incomplete, the imprisonment should be reorganised. This study, for this, suggests to organise the ‘an experimental prison.’ ‘The experimental prison’ is to test several policy with a distinct purpose and a long term plan for the both serious and petty criminal. The final purpose of this is to reduce the close prison and increase the open prison. The scale of this prison must be small and the function of it, such as labour, education, treatment

* The May 18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rehabilitation, should be separated. The facilities of this prison have to be reconstructed as inmate-friendly as possible and to open to the society so that they could develop the social capability.

❖ Key words: Finland, Penal Policy, Priso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Experimental Prison

투고일 : 8월 28일 / 심사일 : 9월 20일 / 게재확정일 : 9월 20일